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31일

나. 발 의 자: 우경란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우경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예방접종 종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감염병예방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고,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조(예방접종 계획의 수립)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제3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.
- 안 제3조(예방접종의 종류)에서는 예방접종 지원을 규정함.
- 안 제4조(예방접종 지원대상자) 및 제5조(예방접종의 실시 등)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예방접종 지원 종류와 횟수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7조(환수조치 등)부터 제9조(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)까지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, 예방접종 비용 상환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0조(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)에서는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우리 구(區)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2021년 11월 제9조제5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었으나, 인플루엔자 외에도 감염병 전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의 사전 대응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
- 인플루엔자 및 백일해는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고,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(질병관리청고시)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에 본 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종류와 지원 대상자는 합당하다고 사료됨. 또한, 동 제정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타 법령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제외 규정을 두었기에 중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음.

- 지원대상을 살펴보면, 인플루엔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여 지원의 폭을 넓힘.
- 또한, 백일해의 고위험군은 1세 미만의 영아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 대상자 중 임신부(임신 3기)가 「백일해통합관리지침」(질병관리청)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며,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3곳에서 조례에 백일해를 예방접종 지원 종류로 지정하고 있음.
- 한편, 대상포진은 감염병예방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정한 감염병 대상 및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은 아니지만,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임. 하지만,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평균 비용 7만~14만 원(질병관리청 대상포진백신의 국가예방접종도입관련 비용-효과분석 참고)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이는 취약계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짐.
- 또한, 서울시 자치구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곳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15개 자치구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참고하여 볼 때, 본 제정 조례의 나이 제한선 또한 합당하다고 여겨짐. 다만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바,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는 예방접종 종류 중 “대상포진”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

(우경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5. .

발 의 자: 우경란, 전승관, 최봉희,
유승용, 이성수, 김지연
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(안 제2조)
- 나. 예방접종 종류(안 제3조)
- 다. 예방접종 지원대상자(안 제4조)
- 라. 예방접종의 실시 등(안 제5조)
- 마. 예방접종업무의 위탁(안 제7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6. 4.~ 6. 8.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방접종 계획의 수립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
2.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
3.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
4.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예방접종 종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인플루엔자
2. 대상포진
3. 백일해
4.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

제4조(예방접종 지원대상자)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인플루엔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

라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

마. 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

바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2. 대상포진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만 65세 이상 구민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

나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3. 백일해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

나.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

다.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

에 포함하지 않는다.

1.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

2.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

③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,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.

제5조(예방접종의 실시 등)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

② 대상포진 및 백일해 예방접종은 차수 접종을 포함하여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

③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예방접종 신청절차)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.

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,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.

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,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.

제7조(환수조치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.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

2.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

우

3.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제8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접종업무를 「의료법」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,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.

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9조(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) ①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

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

한지 심사해야 한다.

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,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10조(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)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.

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.